

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

제정 1973. 8. 10 조례 제323호
개정 1996. 3. 1 조례 제 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2005. 10. 5 조례 제623호(법무행정 처리 조례)
일부개정 2014. 5. 2 조례 제1370호
일부개정 2014. 11. 5 조례 제140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「도로법」 제 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4. 5. 2, 2014. 11. 5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5. 2>

- ① “보도구역”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. <개정 2014. 5. 2>
- ② “횡단차도”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침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. <개정 2014. 5. 2>
- ③ “원인자”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(이하 “타공사”라 한다)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4. 5. 2>
 1. 주유소
 2. 주차장
 3. 자동차 정류장
 4. 자동차 수리장
 5. 자동차 세차장
 6.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

제3조(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)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 차도를 설치할

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

때에는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, 2014. 5. 2>

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>

제4조(원인자의 공사시행)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

[제목개정 2014. 5. 2]

제5조(공사 대행과 비용부담)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. <개정 2014. 5. 2>

제6조(비용의 부과징수) ①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. <개정 2014. 5. 2>

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>

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2>

제7조(규칙)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 5. 2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23호, 법무행정 처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부칙 <2014. 5. 2 조례 제1370호>

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11. 5 조례 제1406호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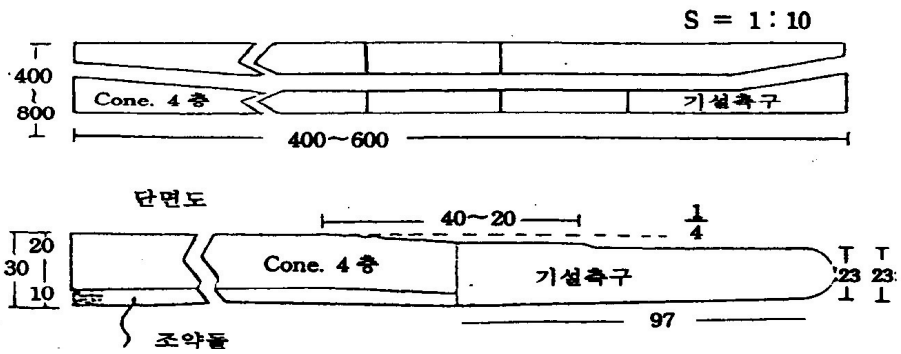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

[별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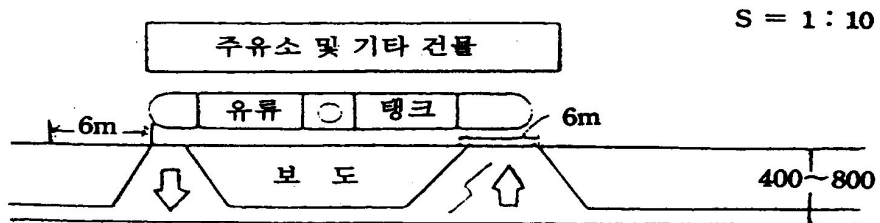
시 공 기 준

1. 횡단차도시설평면도



2. 차도쪽에 따른 평면도

① 폭 12m 이상의 경우



② 폭 12m 이하의 경우

